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2. 10.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2022. 10. 13.

경기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종길 의원 등 9명(김장관, 서보영, 정순옥, 김정희, 박정환, 고명숙, 장호섭, 강한곤)
- 발의일자: 2022. 9. 30.
- 회부일자: 2022. 9. 30.
- 검토기간: 2022. 9. 30 ~ 10. 6.(7일간)

2. 제안이유

-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함에 있어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육성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 및 상인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음식문화거리의 지정 및 지정기준,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 음식문화거리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9조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2. 9. 30. ~ 2022. 10. 11.)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의 환경 및 시설,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집단화의 규모와 상인단체의 구성 등의 지정기준을 비롯한 지정 신청 및 취소 사항과 지원사업 등 음식문화거리의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음식문화거리의 지정 · 운영과 사업지원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시행계획)**
-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 대표자는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단체 등록서류
2. 해당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
2. 음식문화거리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

[서식 1] 별표

[서식 2] 별지 제1호서식

[서식 3] 별지 제2호서식

[서식 4] 별지 제3호서식

[서식 5] 별지 제4호서식

[별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 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 	10
자치기구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 	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 	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 	10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 	10
우수음식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거리 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달서맛나음식점 업소가 있어야 한다. - 예정거리 음식점의 3% 이하 : 6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5% 이상 : 8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10% 이상 : 10점 	10
거리의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 	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0
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10
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		10

비고. –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달서맛나음식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맛나 음식점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단, 거리의 역사성 항목 제외)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신청사항	음식문화거리명	
	위치(소재지)	
	예정거리 음식점 수	
	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달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음식문화거리 지정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사	성명, 생년월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달 서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음식문화거리 지정서

음식문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단 체 명:

대 표 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달서구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			
거리명		신청당시 업소수	
위치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상인조직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타 (변동·참고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